

「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변경계획안은 2019년 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, 2019년 1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9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9년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
건물취득 1건 1동 495㎡ 1,050,000천원임.
- 건물 취득
 1. 2019년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
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 센터 조성 : 1동 495㎡ 1,050,000천원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4. 검토결과

- 지방의회에 의결의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
 -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1,000㎡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

-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 - 「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」 은
 - 건물취득 1건 1동 495㎡, 1,050,000천원,
 -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
토지는 총 10건으로 210,336㎡, 19,944,179천원이며
건물은 총 5건으로 2,958.8㎡, 6,266,387천원이 되겠습니다.

- 사업내용을 보면
 - 『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센터 조성사업』 은
 - 평창 산양삼 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통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'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'공모에 선정되어 군유림 내 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 - 201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,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.
 - 봉평면 창동리 산139번지 군유림 내에 건물 1동(495㎡)을 신축하고 산양삼 가공기계 설치 및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,
 - 2019년 4월까지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.

- 총 사업비의 50%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며 산양삼 특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겠으나, 그동안 시설 투자 후 관리 및 운영 미흡으로 계획대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므로,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~5호 생략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